

의안번호	제2926호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석한 의원 등 4인
발의연월일	2025. 3. 21.

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석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2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1.

발 의 자 : 김석한, 김향숙, 정영환,
김원순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화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 (안 제4조, 제5조)
- 나.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 축소(안 제5조)
- 다.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·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삭제 (안 제6조, 제7조)
- 라. 비상설 위원회 회의 소집 방법 변경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학교급식법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17호

- 예고기간: 2025. 3. 21.(금) ~ 2025. 3. 27.(목) [6일간]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제5조제5항의 방법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20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위원회 회의 등)”을 “(위원회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

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설치 및 기능)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성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.	제4조(설치 및 기능) ----- ----- ----- 위하여 제5조제5항의 방법으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	<u><삭 제></u>
2. ~ 8. (생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20명</u> 이내로 구성한다.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15명</u> ----- 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<u>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<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	

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촉 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군수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~ ④ (생략)

<삭 제>

제10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(발췌)

□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9조(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,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·개설·운영, 판로개척, 컨설팅,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,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지역농산물 우선구매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□ 학교급식법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